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12 선고 2021가단835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진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7. 3. 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17. 4. 27. 접수 제300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조합은 1996. 8. 23. C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2. 10.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12. 9. 18. E 주식회사(당시 상호 : F 주식회사)에게, 2019. 8. 8.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각 양도통지절차가 마쳐졌다.

나. D조합은 1999. 2. 2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 12. 18. C로 하여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들(각 공시송달)을 각 선고받았고, E 주식회사(당시 상호 : G 주식회사) 역시 201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153576호로 C에 대한 전부승소 판결(공시송달)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C가 202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0396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승계참가 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22. 8. 31. ‘C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3. 26.부터 1998. 1.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1998. 1. 15.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원고가 항소심에서 승계참가한 데 따른 변경 판결이고, 판결금의 내용은 전 양도인들이 받은 하는 판결들과 다름없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어머니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H가 2017. 3. 6.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I가 3/17 지분, 자녀인 C, J, 망 K의 대습상속인들, L, M, 피고가 각 2/17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라. 망 H의 상속인들은 2017. 3. 6.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17.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망 H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17 상속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C는 이 사건 대출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액수가 상당하였는데도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7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상속인들 사이에 부모인 I와 망 H를 극진히 모시고 챙겼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대출일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판결들이 모두 공시송달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선고되는 등 C나 피고 등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에게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 단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의 부모 봉양에 따른 기여분이나 분할협의 경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분할협의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C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형우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33.9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3914.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914.1분의 8.43

(- 이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